

의안번호	2216286
의 퇴 인	최혁진의원
회 답 일	2026.3.5.
추계번호	26D0418

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기본사회위원회 및 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 설치,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0억 5,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2억 5,900만원(연평균 6억 5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사회위원회 및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	50	50	50	50	50	250	50
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계획 수립 (안 제13조 및 안 제14조)	3,009	—	—	—	—	3,009	602
합 계	3,059	50	50	50	50	3,259	652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제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기본생활권 보장)	—국가는 생애주기별로 국민에게 돌봄, 교육,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하며,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참여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(주거와 의료의 보편 보장)	—국가는 필수의료, 응급의료 등의 공공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며,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 의료·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함	의무규정

3	안 제9조(사회연대경제의 촉진)	-국가는 공공조달·금융·세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재투자 등을 촉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1조(기본사회위원회)	-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5	안 제12조(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)	-인공지능이 국민의 행복과 기본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6	안 제13조(기본사회 종합계획)	-정부는 5년을 단위로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4조(시·도별 기본사회 종합계획)	-시·도지사는 해당 시·도의 기본사회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·도 기본사회 종합계획(이하 “시·도 기본사회 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16조(시범사업 및 협력)	-국가는 새로운 기본사회 모델 발굴을 위하여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기본생활권 보장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2	안 제8조(주거와 의료의 보편 보장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3	안 제9조(사회연대경제의 촉진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4	안 제11조(기본사회위원회)	○	
5	안 제12조(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)	○	

6	안 제13조(기본사회 종합 계획)	○	
7	안 제14조(시·도별 기본사회 종합계획)	○	
8	안 제16조(시범사업 및 협력)	×	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 및 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각 40명으로 가정하고, 이 중 민간위원은 각 25명으로 가정함
 -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¹⁾으로 가정
 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안 제13조에 따른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안 제14조에 따른 시·도 기본사회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 -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째인 2027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1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).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	2.3	2.0	1.9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사회위원회 및 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 설치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□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 및 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,000만원 등 5년간 총 2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각 위원회별 25명의 민간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 - (연간 소요) 민간위원 25명 × 25만원 × 연 4회 × 2개 위원회 = 5,000만원

[표 2]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사회위원회 설치 (안 제11조)	25	25	25	25	25	125
모두의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(안 제12조)	25	25	25	25	25	125
합 계	50	50	50	50	50	2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계획 수립(안 제13조 및 안 제14조)

□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따라 기본사회 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0억 900만원으로 추계됨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(최근 5건) 예산 평균금액³⁾(177백만원)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에 비용이 발생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(2026.7.1. 시행예정)를 반영하여 16개 시·도에서 시·도 기본사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
3)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(자료: prism.go.kr)

-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90백만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27백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98백만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37백만원),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65백만원)
-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[표 3] 기본사회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(안 제13조)		177	-	-	-	-	177
시·도 기본사회 계획 수립 (안 제14조)	설치 시·도 (a, 개)	16	-	-	-	-	-
	시·도당 소요비용 (b, 백만원)	177	-	-	-	-	-
	소요비용 (a×b, 백만원)	2,832	-	-	-	-	2,832
합 계		3,009	-	-	-	-	3,00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0억 5,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2억 5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사회위원회 및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		50	50	50	50	50	250
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·도 기본사회 계획 수립 (안 제13조 및 안 제14조)		3,009	-	-	-	-	3,009
합 계		3,059	50	50	50	50	3,25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